KOSHA GUIDE C - 45 - 2012

5.6 전기발파

- (1) 미주전류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주전류가 0.01A이상일 때에는 전기 발파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(2) 전기발파기는 확실하게 기동이 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도통시험기는 소정의 저항치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- (4) 약포에 뇌관을 장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뇌관의 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치에 대하여 오차가 ±0.1Ω이내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점화장소는 발파현장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 하고 물기나 철관, 궤도 등이 없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.
- (6) 점화장소는 발파현장이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한다.
- (7)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 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(8) 점화는 충분한 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- (9) 점화는 선임된 발파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은 점화할 때 이외는 시 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.
- (10) 발파후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고 그 단부를 절연시킨 후 재점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